부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의 북한대비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GNP(억$)	3,130	4,021	126	158	24.9배	25.5배
1인당GNI(억$)	6,742	8,581	573	714	11.8배	12배
경제성장률(%) GNI기준	-6.7	10.7	-1.1	6.2	-	-
무역총액(억$)	2,255.9	2,634.4	14.4	14.8	156.7배	178배
외채총액(억$)	1,493.5	1,364.5	121	123	12.3배	11.1배
총인구(만명)	4,643	4,686	2,194	2,208	2.1배	2.1배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UN,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를 GNI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GNI≒GNP)

부록 5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1~2000)

( )내는 북한 공식발표 군사비, (단위 : 억$)

연 도	G N P (한국은행)	총 예 산 (북한발표)	군 사 비	GNP 대 군사비 비 율 (%)	총예산 대 군사비 비 율 (%)	환 율 (미1불:북한원)
1991	229	171.7	51.3(20.8)	22.4	29.9(12.1)	2.15
1992	211	184.5	55.4(21.0)	26.3	30(11.4)	2.13
1993	205	187.2	56.2(21.5)	27.2	30(11.4)	2.15
1994	212	191.9	57.6(21.9)	27.2	30(11.5)	2.16
1995	223	208.2	63.0	27	30	2.05
1996	214	?	57.8	27	?	2.14
1997	177	91.0	47.8	27	52	2.16
1998	126	91.0	47.8(13.3)	37.9	52(14.6)	2.20
1999	158	92.3	47.8(13.5)	30	51(14.6)	2.17
2000	?	93.6	45~50(13.6)	?	48~53(14.5)	2.18

※ 1995~1997년도 군사비 규모는 GNP의 평균 27%, 1998년도는 총예산의 평균 52%를 적용한 잠정 추정치 임

남북 군사력 비교

1999. 12. 31.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			지상군	56만여명	69만여명	100만여명	117만여명
			해군[1]	6.7만여명		6만여명	
			공군	6.3만여명		11만여명	
주요전력	지상군	부대	군단	11개		20개	
			사단	49개[2]		67개[3]	
			여단[4]	19개		78개 (포병 30여개 여단 제외)	
		장비	전차	2,36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400여대		2,300여대	
			야포[5]	5,180여문		12,500여문	
			헬기	600 여대		-	
	해군	수상전투함		160여척		430여척	
		지원함		20여척		470여척[6]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7]	
		항공기		70여대		-	
	공군	전투기		540여대		870여대	
		특수기		40여대			
		지원기		230여대		840여대[8]	
예비전력(병력)				304만여명[9]		748만여명[10]	

주 : 1) 해병대를 해군에 포함
2) 해병대 사단 포함
3) 미사일 사단(1) 포함
4) 보병, 기보, 전차, 특수전, 경비, 해병, 강습 등 기동/전투여단 포함
※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여단 제외
5) 야포는 로켓, 유도무기, 다련장, 방사포 포함
6)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7) 잠수정 40여척 포함
8) 항공기(헬기)는 공군에서 통합 운용
9)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0)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요원 포함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

■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일 자	개 발 / 생 산 활 동
70년대 초	·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획득(추정)
1976~1981	·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	·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
1986	· SCUD-C 미사일 시험 발사
1988	· SCUD-B/C 작전 배치
1989	· 노동 미사일 최초 식별, 개발 시작 추정
1993	· 노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1994	·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1998	· 노동 미사일 작전 배치
1998. 8	· 대포동 1호 시험발사(북한측 : 위성발사 주장)

■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 분	SCUD-B	SCUD-C	노동-1호	대포동-1호	대포동-2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2,500	개발 추정
탄두중량 (kg)	1,000	770	1,000	1,000(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연합 및 합동훈련 현황

1. 한 · 미 연합연습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을지포커스렌즈 (UFL)연습	종합지휘소 연 습	한국방위를 위한 충무계획 및 작계 5027 수행절차 숙달	• 연합위기 관리절차 연습 • 전시전환절차 연습 • 미 증원군 전개절차 연습 • 작계 시행절차 연습
연합전시증원 (RSOI)연습	지휘소 연습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절차 숙달과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동원, 군수지원, 후방지역 조정관 임무, 전투력 복원 절차 숙달	• 미 증원군 이동관리 및 부대 추적 절차 연습 • 전시지원(WHNS)절차연습 • 양륙공항/항만 방호 및 연합선박 통제 연습 • 한국국적 선박 동원절차연습 • 전투력 복원 훈련
독수리 연습 (Foal Eagle)	야외 기동연습	연합 특수작전 및 후방지역 작전능력과 공 · 지 · 해 합동 작전능력 향상	• 연특사 작계시행 훈련 • 2군 후방지역 및 통합방위 작전 연습 • 군단급 FTX 및 연합/합동 상륙 작전
팀스피리트 (T.S)훈련	야외 기동훈련	한 · 미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 1994년 이후 연습중단 * 1998년 이후 연습실시 여부 언론발표 중단	• 전구급 연합 및 합동훈련 • 공중강습, 도하, 사단급 기동훈련 • 항모훈련, 비상 이 · 착륙훈련

2.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합참지휘소 (압록강)연습	지휘소 연습	전시대비 합참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 평시작전지휘/참모활동절차 숙달 • 전쟁억제/위기관리 전환절차 숙달 •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
호국훈련	야외 기동훈련	대부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	•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향상 • 공 · 지 · 해 합동작전능력 향상 • 신작계 검증 및 적 화생전위협 대비 책강구 • 실전적 전투근무지원 체제 확립

3. 한반도 주변의 주요 연합훈련

훈련명	시 기	참 가 규 모	훈 련 내 용
환태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짝수년 5~7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 해상공방전, 해상교통로 보호 • 해상차단 및 항공강습 • 함포 사격 훈련
한 · 일 수색 및 구조훈련	격년제 (홀수년 8~9월)	한국, 일본	• 한 · 일 해군간 함정 · 항공기의 조난선박 수색 및 구조 훈련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 (Pacific Reach)	2000년 최초 실시 (10.1~14)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 서태평양 구역내 우방국간 상호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내용누락

내용누락

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戰員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
(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부 산
(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군 산
(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대 구
(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강 릉
(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
(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흥 남
(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신안주
(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청 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만 포
(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 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

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미 육군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 덕 회
마크 W.클라크	김 일 성	

〈참 석 자〉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대표
윌리암 K.해리슨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모든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 · 전복 행위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 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 ·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 · 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 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 ·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 · 중상 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기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

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 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 · 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 · 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6 · 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협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김 정 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 9. 26

제 주 도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부 장
조 성 태	김 일 철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1962. 1.	• 북한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건설 : 소련의 지원하에 착공
1974. 9.	• 북한 IAEA 가입
1977. 9.	• 북한 IAEA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체결(IRT-2000)
1980. 7.	• 북한, 열출력 30MW 제1원자로 착공
1985. 12.	• 소련 원자력발전소의 대북제공(440MW×4)을 위한 경제기술 협력 협정 체결 (그러나 결국 미제공)
12. 12.	• 북한 NPT 가입
1986. 12.	• 북한 정무원 산하 원자력 공업부 신설
1987. 2.	• 북한 제2원자로 시험 가동
6. 5.	• IAEA, INFCIRC-153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안) 북한에 전달
1990. 3. 6.	•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1. 16.	• 주UN 북한대사, IAEA사찰 수락조건으로 주한 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 사찰 제의
1991. 6. 28.	• 노태우 대통령, 동북아 비핵화실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표명
11. 8.	• 노태우 대통령 비핵 5원칙 선언 :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으며,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을 포기, 북한의 핵사찰 수용 촉구
12. 31.	• 한국과 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 핵무기 제조 접수 사용 금지 · 핵에너지 평화목적 이용 · 재처리 및 농축시설 미 보유 · 쌍방합의하는 대상에 사찰실시 · 1개월내 핵통제공동위 구성 · 본문 교환시 효력 발생
1992. 1. 30.	• 북한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
3. 14.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설립(1차회의 : 3.17)
4. 9.	• 북한 IAEA 안전조치협정서 비준 • 북한-IAEA 핵안전조치협정 발효(4.10)
5. 4.	•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함. 북한 7개 시설과 1989년 결함 핵연료에서 재처리한 약 90g의 플루토늄 보유를 신고
5. 23.~6. 5.	• IAEA 북한 제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찰 실시
12. 12.	• IAEA는 핵폐기물 보관시설로 의심되는 2곳에 대한 접근을 북한에 비공식 요청. 북한은 1곳에 대해서만 유안사찰 허용
1993. 2. 10.	• IAEA Hans Blix 사무총장, 북한의 2곳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 촉구
3. 12.	• 북한 NPT탈퇴선언(6.11 탈퇴 유보)

일 자	주 요 내 용
1993. 5. 11.	•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에게 (1) IAEA 사찰 수용, (2) NPT 탈퇴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6. 2. ~ 6.11.	• 미국 · 북한 뉴욕에서 첫 번째 고위급회담 개최 • 북한 IAEA의 전면적이고 비편향적인 안전조치에 동의
7.14. ~ 7.19.	• 미 · 북 2번째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
11.	• 북한 핵문제 일괄처리를 미국에 제의
1994. 5.	• 북한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고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연료를 인출
6.13.	• 북한 IAEA 탈퇴서한 제출
6.15. ~ 6.18.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 • 핵프로그램 동결 대신 미 · 북간의 고위급 회담 재개 제의
7. 8. ~ 7.10.	• 미 · 북간 3번째 회담 제네바에서 개최, 북한 핵동결에 대해 논의
10.21.	• 미 · 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체결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1,000MW급 경수로 2기 제공) · 대체 에너지 중유를 연간 50만톤 제공 · 미 · 북 관계 개선 ·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대화 재개 · 북측의 비핵화의무 이행
11. 1.	• 북한 핵활동 동결 선언
1995. 1.18. ~ 1.23.	• 5MW원자로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 · 북 회담 개최 (건식보관 합의)
3. 9.	• 뉴욕에서 KEDO 협정 서명 · 집행이사국 : 한국, 미국, 일본, EU(4개국) · 일반회원국 : 핀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7개국)
6.20.	• 5MW 원자로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국 기술진 북한 도착 (폐연료봉 8,000여개 확인)
12.15.	• KEDO ·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전문 18개조 / 부속서 4개
1996. 4.27.	• 미국NAC International사가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에 대한 밀봉작업(Canning) 개시
7. 11.	• KEDO · 북한간 '특권 면제', '통행', '통신' 의정서 서명
9.18.	•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1997. 6.24.	• KEDO · 북한간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서명
7.28.	• KEDO 금호 사무소 개설, 부지 정지 공사 착수
1998. 8.10.	• Time(8.17)지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제기
8.31.	•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9.24.	• IAEA 총회, 북한 핵사찰 이행결의안 채택

1998. 11. 10.	• KEDO 이사회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 총공사비 : 46억불 · 한국 : 공사비의 70%(정률, 약 32억 2천만불) · 일본 : 10억불 상당의 엔화 기여(정액) · 미국 : 잔여 3억8천만불에 대한 조달책임
1999. 3. 16.	• 미 · 북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협상 타결 · 사찰일정 : 1차 1999.5월 중순, 2차 2000년 5월, 3차 미국 요청시 · 기타 : 식량 60만톤 지원, 감자재배 시범사업 지원
5. 3.	• 일본, KEDO · 일본간 차관공여 협정 서명
5. 18. ~ 5. 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 ·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Joel Wit외 14명 · 방문결과 : 거대한 복합 터널로 구성된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그러나 차후 전용 가능한 거대한 시설임 · 미국 입장 : 기본합의문 위반 사항 발견하지 못함, 추가원자로 건설은 합의문 위반
5. 25. ~ 5. 28.	•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한 방문
7. 2.	• 한국 · KEDO간 차관공여 협정 서명 : 차관 규모 32.2억불
8. 12.	• 국회, 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 · 핵연료봉 보관탱크에 모니터링 장치 미허용
8. 24.	•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긴급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9. 12.	• 미 · 북간 미사일 회담 합의
9. 15.	•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W. Perry의 대북정책권고안 미 의회 보고 · 대북정책 추진 3단계 : 1.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2. 북한 핵, 미사일 개발중단 보장(중기), 3.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 정책권고 :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2.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3. 한 · 일과의 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 존속, 4.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5.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비
9. 17.	• 클린턴 미 대통령 대북제재 부분 해제 발표
9. 25.	• 북한 백남순 외상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미 · 북 고위급 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9. 30.	• 호주, KEDO에 2백만 호주달러 지원 결정
10. 1.	•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10. 5.	• KEDO 연차총회 뉴욕에서 개최
10. 7.	• 미 의회 2000년도 중유비용 3,500만불 승인
10. 13.	• 미 상원 CTBT 비준안 부결
10. 23.	• 북한행 러시아 열차에서 방사능 검출. 러, 북 핵 밀거래 의혹 제기

일 자	주 요 내 용
1999. 10.28.	• KEDO, 초음파 유량 측정기로 대북 중유감시 · 중유공급지역(공급비율) : 선봉(59%), 평양(15%), 북청(15%), 청진(5%), 동평양(3%), 순천(2%), 영변(1%)
11. 3.	• 미 공화당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속 가능성 지적
11. 16.	• 1999년분 중유 50만톤 북한에 제공완료
11.23. ~ 11.24.	• KEDO 집행이사회 개최, 융자계획 및 주계약 체결 문제 논의
12. 15.	• KEDO · 한전간 주계약 공식 서명 · 1호기 2007년, 2호기 2008년 완공 예상
12.28.	• 한전 국내업체인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주), 한국 원자력연료(주) 등과 KEDO 원전 협력 계약 체결
2000. 1.22.	• 미 · 북 베를린 회담 개최,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1.28)
1.28.	• KEDO-일본국제협력은행 경수로건설비용 분담금 융자계획 체결
2. 2.	• 대북 경수로 지연에 따른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2. 3.	• 대북지원 경수로 본공사 시작
3. 7.	• 미 · 북 고위급 준비회담 뉴욕에서 개최 · 북한 : 테러국 제외, 관계 개선 · 미국 : 미사일포기, 제네바합의 지속 논의
4. 1. ~ 4. 4.	• KEDO · 북한간 훈련의정서 협상(3차) · 합의 도달, 서명만 남음
5.25. ~ 5.27.	• 미국에 의한 북한 금창리지역 2차 사찰 실시 · 1차 방문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7. 3. ~ 7. 4.	• KEDO · 북한간 품질보증의정서 협상(4차) · 기술적인 문제로 협상 결렬
7.30.	• KEDO · EU간 추가 기여문제 협의

주요 국제 군비통제협약/기구

1. 핵확산 금지조약(NPT : Non-proliferation Treaty)

주요내용	• 핵의 평화적 이용 증진 • 핵무기 기술, 핵물질의 획득 · 이양 · 원조 금지 • 핵확산 방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NPT가입시 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화
추진경과	• 1958년 아일랜드가 유엔 총회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에 관한 가결의안 제출 • 1966년 유엔은 18개국 군축회의(ENDC)로 하여금 조약원칙을 제정토록 결의 • 1970년 미 · 소 · 영 등 주도로 발효
가입현황	• 187개국(2000년 9월 현재) ※ 주요 미가입국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 • 1975년 한국가입, 1985년 북한가입(1993.3 탈퇴선언후 1993.6 탈퇴 유보)
최근동향	• 1995년 5월 NPT 평가/연장회의를 개최, 무기한 연장 결정 • NPT평가회의 5년마다 개최 • 핵 선진국은 NPT 강화를 계속 주장, 핵 후진국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평화적 핵이용 관련 핵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
추진방향	•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아국의 적극 지지 및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 촉구 •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 핵 비보유국들의 핵 보유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군축 요구 증대

2.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주요내용	• 지하, 수중, 대기권,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 핵폭발을 포함한 전면적 핵실험 금지 • 검증이행 체제 수립(국제 검증기구, 핵실험 탐지 기지망 구축 등) ※ 5개 핵무기 보유국, 남 ·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44개국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 비준 후 180일 경과 시 발효 (단, 2년내 발효 불가)
추진경과	• 1970년 이후 UN 제1위원회(정치 · 안보분야)가 수차례 CTBT 권고 결의안 채택 불구, 미국 등 핵강국 비협조로 진전 별무 • 냉전종식, START(전략무기 감축협정) 체결,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으로 인해 CTBT 체결 필요성 증대 • 1996.9월, 호주 주도하 한 · 미 · 러 등 126개국 공동제안으로 CTBT 결의안을 제52차 UN 총회에 상정, 채택
가입현황	• 1996.9월 서명 개방 후 2000. 9월 현재 한 · 미 · 일 · 중 · 러 등 155개국 서명(필수 비준국 44개국 중 28개국 비준), 비준 55개국
최근동향	• 1997.3월 이후 서명국들은 사찰, 교육, 감시체계 운용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CTBTO(전면핵실험금지조약기구)창설 작업 추진 중 • 미국 등 서방그룹은 협약의 발효를 위해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주요 미서명국의 조기 서명 유도에 주력 • 서명국들은 임시사무국 조직 · 예산 등에 합의, 실무 산하조직도 구성 완료하여 이행준비 방안을 강구 중
추진방향	•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CTBT 가입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속 예상 • 아측 전문요원의 CTBT 기구 진출노력 계속

3.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주요내용	• 생물무기/투발수단의 개발 · 생산 · 비축 · 획득 · 사용을 배제하고 비축된 생물무기 및 생산설비를 폐기하거나 평화 목적으로 전용 • 세균학 분야의 평화적 이용 노력 지속 • 5년마다 BWC 평가회의 개최 ※ 협약 이행상의 문제점 - 협약 이행의 검증 및 제재 방안 결여 -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어연구 활동 허용으로 필요시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 내포 - 행정 및 기술 업무 담당 기구(사무국) 없음
추진경과	• 1925년 6월 Geneva 의정서 채택 - 질식성, 독성, 기타 가스 및 세균의 전쟁목적 사용금지 규정 - 그러나 이들의 개발, 생산 및 비축에 관한 규정은 없음 • 1970년대 소련, 동구 국가들은 생 · 화학무기의 포괄적 금지 협약을 주장하였으나 미 · 영 등이 생물과 화학무기를 분리해서 다룰 것을 주장, 생물무기 금지 협약안만 제출 • 1969년 미국의 화생무기 폐기 선언, 1970년 화생무기 생산비축 및 사용 포기 선언으로 BWC 협상 가속화 • 1971년 12월 회원국들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안) 채택 • 1975.3.26. 협약 발효
가입현황	• 141 개국(2000. 9 현재), 1987. 6. 한국가입, 1987. 3. 북한 가입 •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
최근동향	• 현재 국제검증체제 구축(검증기구 수립 및 검증 관련 세부 절차) 방안 논의 중 • 1995년~현재까지 제네바에서 BWC 검증방안 논의를 위한 특별그룹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 아국 대표단 구성(외교부, 국방부, 산자부 관련 요원) • 제3차 평가회의(1996.12)시 차기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2001년까지 검증의정서 협상을 완료하기로 회원국간 합의
추진방향	• BWC 검증의정서 협상에 적극 참여, 아국 입장 반영 - 아국의 생물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지속적 강구 • 북한의 BWC 검증체제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 - 북한이 검증체제 참여시 북한 생물무기 위협제거 가능

4.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주요내용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협약 발효후 10년 이내) • 협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 실시. • 당사국은 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제적 지원 및 보호 받을 권리 보유.
추진경과	• 1968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다자간 협상결과 CWC 발족 • 1993.1.13 CWC 서명식(파리, 한국 포함 126개국) • 1997.4.29 협약 발효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발족 ※ CWC 협약 이행의 검증 및 협의를 위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설립.
가입현황	• 서명국 171개국, 비준 139개국(2000. 9. 현재) • 1997년 한국 가입, 북한 미가입
최근동향	• 제3차 당사국총회(1998.11)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피선 • ADD 화학분석실이 OPCW 공인실험실(미국을 비롯한 12개국)로 지정 • 1998년 11월 OPCW사무총장 방한 • OPCW내의 참모 및 국제사찰관 요원으로 4명의 영관장교 진출 활동
추진방향	• 북한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을 이행토록 추진 • 비준 당사국간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관련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5. 쟁거 위원회(ZC : Zangger Committee)

주요내용	• 성격 : 핵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 수출규제품목 : 핵물질, 장비 및 시설 ※ 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 미포함
추진경과	• NPT 3조 '당사국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핵물질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스위스 외교관 Zangger씨 주도로 1974. 8. 설립
가입현황	• 34개국(우리나라는 1995. 10. 17. 가입/북한 미가입)
평 가	• 규제품목이 적고, 수출조건이 미약하여 전체적인 역할 미미

6. 핵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ier Group)

주요내용	• 핵관련 물질의 수출 조건 - 수출품에 대한 IAEA전면 안전조치 적용 - 제3국으로 재이전(수출)시 원공급국의 사전 동의 - 물리적인 방호조치 및 평화적 목적 사용 서약 • 규제품목 - 1부 : 핵물질/시설/장비/기술 등 43종(쟁거위원회 규제품목 포함) - 2부 : 2중용도 품목 69종(로봇, 공작기계, 고폭약 등 첨단재료)
추진경과	•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이후 쟁거위원회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강력한 통제체제의 필요성 인식 확대 • 1978년 1월 미국, 영국 주도로 7개국이 런던지침을 발표하여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NSG) 설립
가입현황	• 미, 영, 러 등 35개국(한국은 1995.10.13. 가입/북한 미가입)
최근동향	• 제3세계/개도국들에 대한 원자력 수출규제/기술이전 제한 예상 • 한반도 핵위협 감소를 위해 회원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對북한 감시 노력 지속

7. 호주 그룹(AG : Australia Group)

주요내용	• 화생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회원국 상호 협조 - 화생무기 확산 관련 정보교환/협의로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효율성 제고 - 필요시 추가조치 채택 등을 검토 • 비공식 협의체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규제조치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시행 - 규제조치는 회원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지에 좌우
추진경과	• 이란 · 이라크 전쟁에서 화학무기 사용 주장 대두 • 1985. 4, 호주 외무장관 Haydon에 의한 화생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협의 제안, 호주그룹 설립 • 1985. 6, 제1차회의 이후 연 2회 '파리' 호주대사관에서 회의 개최 • 54개 품목의 화학무기 원료물질 수출 통제 • 생물무기 원료물질 및 제조시설/장비 이전 통제 합의(1992.12)
가입현황	• 30개국(1999.3. 현재, 한국 : 1996.10. 가입)
최근동향	• CWC 발효와 연계, 화생무기 확산방지에 더욱 주력

8. 바세나르 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주요내용	•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 - 재래식 무기 :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등 'UN재래식무기 등록제도' (1992. 2)에 따른 품목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정밀공작기계, 수퍼 컴퓨터 등 • 통제방법 - 각 회원국이 통제품목 선정, 수출허용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 - 수출관련 정보교환 의무화, 회원국간 협력 및 수출통제 일관성 도모
추진경과	• 1996. 11, 미 · 영 · 불 등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1949년 창설) 17개 회원국은 냉전 이후 지역분쟁 유발국으로의 전략물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COCOM을 해체하고 러시아, 동구 등 공산권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창설
가입현황	• 2000년 9월 현재 33개국 가입(한국 포함)
최근동향	• 동 체제 출범후 현재까지 세부 운영방침 등 계속 논의중 •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1993발행, 1999. 5 개정)를 통해 협조

9.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주요내용	• 무차별적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4개 의정서로 구성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 화염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 레이저 실명무기 사용금지 • 제2부속의정서(지뢰) 개정안(1996.5.3) 주요내용 · 탐지불능 대인지뢰의 원칙적 사용금지 · 탐지물질(8g이상 금속) 부착후 민간인 보호조치(표식, 감시, 차단물) 강구시 사용가능 · 탐지물질 부착은 9년간 유예 가능(즉 9년간 사용가능) · 원격투발(500m이상) 대인지뢰는 자동폭발 · 자동무능화 장치 구비 · CCW 회원국간 기술이전 허용, 비회원국에게 지뢰/기술이전 금지
가입현황	• 2000년 9월 현재 79개국 가입(미, 중, 러, 일 등 가입, 북한 미가입, 남한 가입 추진중)
최근동향	• 오타와 협약 문안에도 CCW 미가입 국가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미가입 국가의 최소한 CCW 가입을 촉구하는 의미)함으로써 CCW의 가입은 선택적이 아니라 당위적인 조건으로 변화

한 · 미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18.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델레스

제31차 SCM 공동성명(1999. 11. 23.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1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 미 양국의 고위 국방 ·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11월 23일 동 회의에 앞서 조영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셀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제21차 한 · 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상황과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긴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 · 미 상호방위조약과 한 · 미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인 남 ·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해 남 · 북한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국정부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의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한 포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남 · 북한간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 및 서해안공단 개발사업 추진 등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언 장관은 북한과의 화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 미 양국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한 확고한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양국 장관은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와 99년 9월 및 11월의 미 · 북 베를린회담 등을 통해 최근 이룩한 미 · 북 관계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은 향후 계속될 미 · 북간 협의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대화 진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보여진 한 · 미 · 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 및 조율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5. 양 장관은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4차, 제5차 및 제6차 본회담에서 4자가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분과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룩한 진전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차기 제7차 4자회담 본회담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정전협정의 유지와 비무장지대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6.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 2월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 · 북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며, '미 · 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영변 및 태천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북한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내 경수로 건설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지하의혹시설 건설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합의에 의해 향후에도 계속될 동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그 성격에 대한 의혹이 감소된 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7.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한 · 미 양국의 국가 이익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은 지난 6월 연평해전과 관련, 북한에 대해 지난 46년간 남 · 북한군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었던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등 주요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생 · 화학무기가 한국 및 미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의 생 · 화학 무기의 생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생 ·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8. 코언 장관과 조 장관은 1999년 9월 북한이 미 · 북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시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 · 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의 견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9.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 · 미 안보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의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한 · 미 연합군이 방어전력으로 연합방위태세, 전술, 교리, 전문성, 훈련 및 상호운용성을 계속 유지 ·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 · 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한 · 미간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한국의 생 · 화학전 대비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점에 주목하였다.

10. 양자 안보동맹관계의 장기적 미래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한 · 미 안보동맹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한 · 미 양국이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향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 · 태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21세기에 대비한 장기적 한 · 미 동맹관계 발전 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급 안보대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국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 · 미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지난 50년동안 동반자로서의 양국간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조사과정이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투명성 있게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또한 한 ·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가능한 신속히 타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국의 현행 미사일 자율규제 문제가 MTCR 지침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3.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 · 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커다란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 · 미 공동실무단을 통해 협의되고 있는 획득관련 문제가 SCM 분과위원회 및 양국 산업체들간의 전향적인 협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시지원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부록화와 기술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전시지원협정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양국 대표단은 제31차 SCM 및 제21차 MCM이 한 · 미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2000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조 장관은 코언 장관이 보여준 미측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제32차 SCM 공동성명(2000. 9. 21.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2차 안보협의회의(SCM)가 2000년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조영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셸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9월 20일 제22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특히 6.13~15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긍정적 발전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협력과 근본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 코언 장관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양 장관은 동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심도있게 토의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히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1) 한·미 양국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 2)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 3) 긴밀한 한·미·일 공조 4) 국제사회의 지지 등 4가지 요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과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그리고 NPT 및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 협정상 북한의 책임 등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제2차 조사가 신속히 완료되어, 관련시설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1999년 5월 1차 조사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간 대화, 남·북 경협, 비무장지대 확성기 비방 자제 등 조치로 남·북간 화해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미사일 계획 등이 한·미 및 지역안보에 계속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남·북 대화 및 북한과 여타 국가간의 외교관계 증진으로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6. 양 장관은 핵 비확산, 미사일 및 테러문제와 같은 미·북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양측간 대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미·북간 최초의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이 2000년 6월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하고, 미·북 미사일회담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미·북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가 개선·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7. 양 장관은 4자회담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용한 포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남·북 관계 및 미·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4자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1953년 군사정전협정이 유효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8.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북한 포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 · 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사시 한 · 미간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 · 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연합대비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9. 양 장관은 한 · 미 안보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 · 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장관은 21세기에서의 장기적 한 · 미 안보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 · 미 공동협의체를 통해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지난 50년 동안 동반자로서 양국간에 형성된 신뢰와 우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장관은 노근리 진상규명 과정이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투명성 있게,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1.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000년 8월 서울에서 재개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SOFA를 개정키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측의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SOFA를 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 · 미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SOFA 개정을 가급적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또한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MTCR 지침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코언 장관은 주한미군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수립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를 개시토록 승인했음을 밝혔다. 양 장관은 동 계획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의 요구와 주한미군의 훈련 소요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간에 세부계획을 충분히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계획은 주한미군이 소규모의 신규 공여지를 제공받고 현재 사용중인 상당부분의 공여지를 반환함으로써 미군 부대 및 시설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4.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방산 · 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양국 국방부간 현안문제 협의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5. 양국 대표단은 제32차 SCM 및 제22차 MCM이 한 · 미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2001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코언 장관은 한측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군사교류협력 현황(1995~2000)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5	1.19	미국 합참의장 방한	
	1.27	미국 국무장관 방한	
	2. 8	미국 한국전참전기념사업회장 방한	
	2.24	미국 국무부 동아 · 태 차관보 방한	
	3.21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3.27	미국 태평양 사령관 방한	
	4. 3~14		합참의장, 미국/일본 방문
	4.18	미국 의회전문위원/보좌관 방한	
	4.29~5.10		국방차관, 캐나다/폴란드/일본 방문
	5. 1~5	일본 항공막료장 방한	
	5. 7~12	말레이시아 참모대교수 방한	
	5.19~21	한 · 러시아 장관회담(서울)	
	5.19~22	호주군함(2척, 533명) 방한	
	5.22~28	일본 방위연구소 학생 방한	
	5.23~27	독일 국방장관 방한	
	5.24	미국 국방지도협의 회원 방한	
	6. 1~7	태국 육군대학원생 방한	
	6. 5	미국 육사생도 방한	
	6. 6~9	파키스탄 해군참모총장 방한	
	6. 9		제2차 동아시아 안보토의 참가 (미국)
	6.11~16	페루 국방장관 방한	
	7.10~15		국방차관, 말레이시아 방문
	7.25~28	말레이시아 육군총장 방한	
	8.16	미국 방위비 분담대사 방한	
	8.24	미국 상원의원(1명) 방한	
	8.26~29		한 · 이스라엘 국방장관 회담 (이스라엘)
	8.28	미국 해군차관 방한	
	9. 2		한 · 미, 한 · 일국방장관 회담(미국)
	9. 6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9.14~15	한 · 독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서울)	
	9.22~24	한 · 일 국방장관 회담(서울)	
	9.30	영국 왕립국대원생 방한	
	10.11~14	한 · 일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서울)	
	10.18	미국 국방비 분담대사 방한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5	11. 2	미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방한	
	11. 4~10	터키 지상군사령관 방한	
	11. 9~23		아 · 태 영관장교 안보세미나 참가 (일본)
	11.13~18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학생 방한	
	11.29	에티오피아 국방장관 방한	
1996	1. 5	한 · 영 국방장관회담(서울)	
	1.15	미국 국방부 아 · 태차관보 방한	
	1.18~19		ARF 회기간 지원그룹회의 참가 (일본)
	2.25~29	파라과이 육군사령관 방한	
	2.26	한 · 스웨덴 국방장관회담(서울)	
	3. 2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3.18~26		아 · 태 다자안보대화참가(태국)
	3.26	필리핀 공군사령관 방한	
	3.30~4.2	싱가포르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 (1척, 49명) 방한	
	3.30~4.6	파키스탄 해군참모대생(13명) 방한	
	4. 4~9	프랑스 해군함정(1척, 90명) 방한	
	4.15	미국 국방장관 방한	
	4.27~5.3		국제 안보협력회의 참가(영국)
	5.13		한 · 일 국방장관회담(일본)
	5.17		한 · 태국 국방장관회담(태국)
	5.19		한 · 사우디 국방장관회담(사우디)
	5.26~28	사우디 전걸프전 통합사령관 방한	
	6. 3	한 · 파키스탄 국방장관회담	
	6. 3~8	폴란드 바르샤바군관구사령관 방한	
	6. 4	일본 신진당의원단 방한	
	6. 7		제3차 동아시아 안보토의(미국)
	6. 9~14		제5차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미국)
	6.10~16	일본 방위연구소 학생 방한	
	6.12	네덜란드 통신장관 방한	
	6.13~17	프랑스 국방참모대생 방한	
	6.21~25		국방차관, 싱가포르 방문
	6.29~7.4	태국 해사 순항함정(2척, 400명) 방한	
	7. 2~14		합참의장, 루마니아/스위스/스웨덴/ 일본 방문
	7. 8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한 · 호주 정치군사합동회의(서울)	
	7. 8~10	한 · 말레이시아 군수공동위원회 (서울)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6	7.16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7.26~8.2	러시아 해군창설 300주년기념행사 참가 (함정 2척, 425명)	
	8. 6	세계정치학회, 군사연구위원회 회원 방한	
	8. 7	미국 제7함대사령관 방한, 미국 국방부 정보본부장 방한	
	9. 2~6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방한	
	9.14~18	뉴질랜드 국방차관 방한	
	9.17~20	영국 공군참모총장 방한	
	9.21~24	말레이시아군 총사령관 방한	
	9.23~24	일본 방위청 정무차관 방한	
	10.16~19		한 · 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참가
	10.21~24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방한	
	10.30~31		국방부장관, 미국 방문
	11. 3~ 6		국방부장관, 러시아 방문
	11.15~20	이탈리아 해군함정 방한(2척 562명)	
	12. 8~10	일본 통합막료의장 방한	
	12.11~21		한 · 구주 국방정책실무회의 참가 (독일/프랑스/영국)
1997	2. 1~ 4	미국 육군 예비군 사령관 방한	
	2. 3~ 5	키르키즈 국방장관 방한	
	2.25~29	파라과이 육군사령관 방한	
	3.20~22	일본 육상막료장 방한	
	3.29	스위스 국방참모총장 방한	
	4. 1	Cohen 미 국방장관 방한	
	4. 8~ 9	미국 합참의장 방한	
	4.20~26	스웨덴 군 총사령관 방한	
	4.21~25	몽골 국방부 정보국장 방한	
	4.22	미국 Dalton 해군성장관 방한	
	4.22~29	일본 방위청장관 방한	세계 공군참모총장 회의 참가(미국)
	4.30~5.4	터키 지상군사령관 방한	
	5. 6	West 미 육군성장관 방한	
	5.18~21	한 · 이 방산군수공동위, 이스라엘 국방사무차관 방한	
	5.21~6.19	영국 해군함정 방한(5척 1,700명)	
	6. 2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방한	
	6.14~16	인도 해군참모총장 방한	
	6.21~7.5		합참의장, 미국/멕시코/일본 방문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7	6.23~27	제6차 한 · 태 방산군수공동위	
	6.26	제2차 한 · 불 국방정책 실무회의	
	7. 4~9	러시아 부총리 방한	
	7. 5~8		합참의장, 방일
	7. 7~11	방글라데시 국방차관 방한	
	7. 9~11	태국 공군총사령관 방한	
	7.10~12	필리핀 장관 방한	
	7.13~17		한 · 일 국방정책실무회의(일본)
	7.22~26	제3차 한 · 필리핀 군수 · 방산 공동위	
	7.28~8.1	터어키 국방부 경제 · 기술차관보 방한, 제2차 한 · 터어키 방산협력회의	
	7.31~8.1		태평양지역 국제군수회의참가(벤쿠버)
	8. 7~9		제4차 한 · 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일본방위청)
	9. 2~6	일본 항공막료장 방한	
	9. 3~5		제4차 한 · 불 방산 · 군수 공동위(파리)
	9. 5~8	호주 해군함정 방한(2척)	
	9. 8~10		제7차 한 · 영 방산 · 군수공동위(런던)
	9.21~25	영국 해군참모총장 방한	
	9.24~28	독일 함정 방한(4척)	
	10. 8~10	일본 방위청 방위심의관 방한	
	10.20~24		제2회 아 · 태 국방당국자 포럼 참가(동경)
	10.27~28	제3차 한 · 독 국방정책실무회의	
	10.27~11.1	일본 육자대 간부학교 학생장교 한국방문 (28명)	
	11. 5	일본 방위연구소 부소장, 정책차관보 예방	
	11. 6~20		제4차 아 · 태 안보세미나 참가(동경)
	11.16~19	독일 국방차관 방한, 한 · 독 방산협력 MOU체결	
	11.19~21	브라질 해군함정 방한	
	11.19~23	이태리 국방사무 차관 방한, 방산 · 군수 공동위 개최(서울)	
	11.19~26		국방차관, 러시아/중국 방문
	11.21		한 · 러 정책실무회의(모스크바)
	11.26~29	루마니아 국방장관 방한, 군수 · 방산협력 협정 체결	
	12. 5	한 · 호 국방세미나 실시(KIDA)	
	12. 9		제29차 SCM/MCM(워싱턴)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8	1.21~22	미 국방장관 방한	
	2. 2~4	일본 공막방위부장 방한	
	3.24	호주 외무장관, 국방장관 예방	
	4. 1	일본 정보본부 본부장, 국방부 방문	
	4.19~25	케냐 국대원장 방한	
	4.23~24	한 · 미 · 일 동아시아 안보토의(서울)	
	4.24	미 CFR 대표단 방한	
	4.27~29	미 합참의장 방한	
	5. 1~ 4	미 공군참모총장 방한	
	5. 2~17	호주 사관생도 방한	
	5. 6	미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5. 6~ 9	이태리 국대원장 방한	
	5. 6~10	러시아 지상군 총국장(총사령관) 방한	
	5. 9~14	스위스 장교단 방한	
	5.13~28	필리핀 해군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호위함 1척)	
	5.28~6.3	러시아 제1국방차관 방한	
	6. 8~12	프랑스 국방장관 특사 방한	
	6.14~21		호주 국방관리세미나 참석
	6.16~18	30회 SCM 분과위원회 개최	
	6.16~19	제2차 한 · 영 국방정책 실무회의 (서울)	
	6.25	제5차 한 · 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서울)	
	6.26	제1회 한 · 일 안보정책 협의회(서울)	
	7. 6	나이지리아 국대원생 방한	
	7. 8~13	태국 해사생도 순항분대 방한	국방장관, 미국 방문
	8.21	중국 군 부총참모장 방한	
	8.25~9.25	베트남 군인 축구팀 방한 전지훈련	
	8.31~9. 2		국방장관, 일본 방문
	9. 9~10	한 · 호 국방정책실무회의	
	9.12~18		아 · 태지역 민 · 군 포럼(미국)
	9.19	美 국방부 부장관 방한	
	9.28~10.2		아 · 태지역 군고위급 회의(미국)
	10.12	스위스 국방장관 방한	
	10.28~11.2	브라질 육군장관 방문	
	10.29	프랑스 공군참모총장 방한	
	11.10	미상원의원(아 · 태 소위원장) 방한	
	11.16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방한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8	11.16~21	제5차 한 · 불 방산 · 군수공동위회의	
	11.26	일본 육상막료장 방한	
	11.29~12.3	한 · 캐나다 국방정책 실무회의	
	12.15~20		한 · 중 국방정책실무회의 참가 (중국)
1999	1. 6~8	한 · 일 국방장관회담	
	1.14~15	제30차 SCM 개최	
	1.19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2. 2~14		합참의장, 미국/캐나다 방문
	2. 5	파키스탄 해군 참모총장 방한	
	2.26~27	한 · 미 · 일 안보토의 개최	
	3. 2~ 7	러시아 해군 사령관 방한	
	3.10~14	미 국방정보본부장 방한, 미 육군 총장 방한	
	3.17~19	미 태평양 사령관 방한	
	3.21~24	프랑스 해군 총장 방한	
	3.23~26	호주 국방총장 방한	
	3.29~4.1	일본 해자대 실무장교단 방한	
	4.12~16	중국 조정선수단 방한	
	4.22	캄보디아 군 총사령관 방한	
	5. 6	일본 공막장, 장관예방	
	5. 7	뉴질랜드 육군 총장 방한	
	5. 9~19		제54회 CISM 총회 참가(네덜란드)
	5.13	방글라데시 해군총장 방한	
	5.17~21	한 · 필리핀 군수 · 방산 공동회의	
	5.21	미 국참대생 국방부 방문	
	5.26	한 · 호주 국방장관 회담	
	6. 4	싱가포르 국방장관 장관예방	
	6. 6~12		터키군 상륙기동 훈련 참관
	6.13~21	한 · 호주, 한 · 뉴질랜드 안보 · 국방정책실무회의	
	6.16~17		친선 군사사절단 러시아 방문
	6.16~20	에콰도르 육군 총사령관 방한	
	6.17	스위스 국방 · 체육 · 민방위 장관 방한	
	6.21~26		재31차 SCM/SCC, DTICC, LCC 분과위(미국) 참석
	7. 4~ 6	싱가포르 교육부장관 겸 제2국방장관 방한	
	7. 7~ 9		국방부 차관, 뉴질랜드/브라질/베네수엘라 방문
	7.13~14	한 · 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9	7.15		제1차 한 · 일 합참 · 통막 회의(일본)
	7.19~24	해사생도 중국 방문	
	7.29	한 · 미 국방장관 회담	
	8. 6~19		제2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8.12	한 · 러 국방정책 실무회의 개최	
	8.23~29		한 · 중 국방장관 회담
	9. 3	한 · 러 국방장관 회담	
	9.13~17	쿠웨이트 국방장관 방한	
	10. 4~ 9	스위스 군사연구회 장교단(21명)	
	10. 5	영국 국대원생 차관예방	
	10. 6	독일 국참대 총장(랑에 소장), 차관예방	
	10.11	일 방위대학교장 정책보좌관 예방	
	10.18~22	베트남 차관 방한	
	11.10~15	중국 교육대표단 방한	
	11.11~21		상무 농구팀, 방중
	11.17~21		국방장관, 터키 방문
	11.21~23		제31차 SCM 및 제21차 MCM
	11.24		한 · 캐나다 국방정책실무회의
	12. 5~11	베네주엘라 감찰총감 방한(차관회담)	
	12. 7~10	한 · 몽골 국방장관 회담	
	12.14~18		한 · 중 국방정책협의회
2000	1.19~23	한 · 중 국방장관회담(1.20일)	
	1.23~27	한 · 터키 군수 · 방산공동위	
	2. 8		한 · 러 정보실무회의
	2.12~13		제2차 한 · 이집트 정보교류회의
	2.14~15		제1차 한 · 호주 해군 대 해군 회의
	2.14	佛 군사고등연구원장 일행 국방부 방문	
	2.17~18		한 · 러 군축 비확산회의
	2.24	호주 재야국방장관 장관 예방	
	2.26	미 태평양사령관 장관 예방	
	2.27~3.9		한 · 영 · 불 · 독 군수 · 방산공동위
	3.14~17	일 통막의장 방한	
	3.15~25	중국 심양농구선수단 방한	
	3.17~18	미 국방장관 방한	
	3.19~22	미 공군총장 방한	
	3.23~4.1		한 · 영 · 불 · 독 국방정책실무회의
	4.13~19		합참의장, 동티모르/호주 순방